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8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8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 및 제6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 및 제4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 나. 검토의견

#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,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# 2) 주요 내용

-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 및 제6조)

해당 조항	폐지 법률	준용 법률	비고
안 제2조	도시계획법 (2002. 2. 4 폐지)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03. 1.1)	
	토지수용법 (2002. 2. 4 폐지)	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(2003. 1. 1)	
	자연재해대책법 (2005. 1. 27 전부개정)	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	
안 제6조	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(2002. 2. 4 폐지)	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(2003. 1. 1)	
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 및 제4조)

## 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폐지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